

전주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157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A

변론 종결2021. 3. 23.

판결 선고2021. 4. 20.

주 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9.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21. 10. 19.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 악화로(판매부진, 과다경쟁) 2018. 12. 27. 약속어음(4,200만원)이 부도 처리되고 2019. 1. 2. 신용관리정보등록 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C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 1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은행에게 10,943,753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412,864원의 손해금과 99,88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20차전3803호로 채무자 회사와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4. 17. 위 법원은 '채무자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8,642원과 그 중 10,943,753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5. 7. 확정되었다.

마.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9. 1. 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9. 1. 9. 접수 제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시가 1,082,261,250원(= 362,862,750원 + 719,398,5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680만원 상당의 E 올란도 차량(2015년식), 970만원 상당의 F 투싼 차량(2017년식)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피고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G 주식회사에 대하여 109,436,56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며, H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채무 원금은 6억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860,680원의 지방세 외에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의 J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1, 4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채무 원금은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7 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경매5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이미 채무자 회사는 경영 악화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신용관리정보등록 되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매매예약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수익자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6. 채무자 회사에 1억 5,000만원을 입금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실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피고도 2017. 7. 6. 채무자 회사에 1억 5,000만원을 입금하고도 이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진

별지